

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82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8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시립영보정신요양원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정신질환자가 입소하여 요양 및 보호를 위하여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」 제22조(정신요양시설의 설치·운영)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,
- 나. 전문 법인(기관) 및 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 사무명 :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(정신요양시설의 설치·운영)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시립정보정신요양원은 정신질환자의 요양·보호,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가 필요
-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다년간의 성공적 운영경험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정신질환자 입·퇴소 관리, 입소자 건강관리
- 환자인권 및 재산상 권리 보호
- 정신질환자 요양 보호
-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복귀사업 - 작업치료 및 사회복귀훈련
- 시설 안전관리
-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- 시설명 : 시립정보정신요양원
- 소재지 :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
- 시설규모 : 대지 21,824㎡/건물 4,281.78㎡(지상 4층)
- 지원시설 : 정신요양원
- 개소일자 : 2007년 9월

마. 민간위탁기간 : 5년('18.1.21~'23.1.20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: 1,793백만원(국비 50%, 시비 50%)
 - 종사자 인건비 : 1,586백만원(종사자 35명)
 - 관리운영비 : 207백만원(입소자 183명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 제22조(정신요양시설의 설치·운영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
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-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
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, 위탁기간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 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.

나.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팀 성혜란 (☎2133-7545)